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3
----------	-----

발의년월일 : 2015년 5월 19일

발 의 자 : 김인제 의원

찬 성 자 : 성백진, 김영한, 우형찬, 김기대  
최관술, 우창윤, 오봉수, 김희걸  
유찬중, 이현찬 의원(10명)

## 1. 제안이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적합하게”를 “맞게”로 하며 “기재”를 “적은”으로 하고 “부여”를 “붙일”으로 하며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고 “취하여야”를 “뺏아야”로 하며 “상응하는”을 “만큼의”으로 하고 “명시”를 “명확히 적어”으로 함.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적합하게”를 “맞게”로 한다.

제5조제1항중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부여할”을 “붙일”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명시하여”를 명확히 적어“로 한다.

제9조중 “취할”을 “뱉을”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취하여야”를 “뱉아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을 “배상 등의 만큼의”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이용하고자 하는”을 “이용하려는”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14조중 “취하여야”를 “뱉아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신청자"란 자신의 명義와 책임하에 광장을 <u>사용하고자 하는</u>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사용하려는</u> ----- -----.</p>
<p>제3조(관리)</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설치된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이 건립 목적에 <u>적합하게</u> 이용되고 그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제3조(관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맞게</u> ----- -----.</p>
<p>제5조(사용허가 신청)</p> <p>① 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등을 <u>기재한</u> 별지 제1호서식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u>사용하고자 하는</u>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사용허가 신청)</p> <p>① ----- ----- <u>적은</u> ----- ----- <u>사용하려는</u> ----- -----.</p>
<p>제6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p> <p>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u>부여할</u> 수 있다.</p>	<p>제6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p> <p>① ----- ----- ----- ----- ----- <u>붙일</u> -----.</p>
<p>제7조(사용허가 등 통지)</p> <p>① (생략)</p> <p>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p>	<p>제7조(사용허가 등 통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u>명시하여 통지</u> 하여야 한다.</p>	<p>----- <u>명확히 적어 알</u> 려야 ---.</p>
<p>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u>취할</u> 수 있다.</p>	<p>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 ----- ----- <u>باط</u> ----- -----.</p>
<p>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② (생략) ③ 사용일이 <u>경과한</u>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지난</u> ----- ----- -----.</p>
<p>제11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u>취하여야</u> 한다. ② 시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u>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u>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제11조(원상회복 등) ① ----- ----- <u>باط</u> -----. ② ----- ----- <u>배상 등의 만큼의</u> ----- -----.</p>
<p>제12조 (조형물등의 이용승인) ① 조형물등을 저작권법 범위의 저작물로써 <u>이용하고자</u>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형물등 이용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 승인 사항을 <u>변경하고자</u>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조형물등 이용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p>	<p>제12조 (조형물등의 이용승인) ① ----- ----- <u>이용하려는</u> ----- ----- -----. ② ----- ----- <u>변경하려는</u> ----- -----</p>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 (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 12조에 따른 이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위반시 조치사항) ----- ----- ----- ----- <u>밟아야</u> -----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에 대한 각 안들이 “자구수정”임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김 인 제